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192호

거여·마천재정비촉진지구 마천시장정비사업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-294호(2008.8.28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·고시 된 거여·마천재정비촉진지구 마천시장정비사업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 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 기한을 연장하고, 같은 법 제20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5월 7일
서울특별시 장

1. 정비구역의 명칭 : 마천시장정비사업구역
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구역명	위 치	면 적(㎡)	정비구역지정일(고시번호)
마천시장정비사업구역	송파구 마천동 140-3번지 일대	9,757.0	2008.8.28.(서울특별시고시2008-294)

3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내역

구분	구역명	위 치	면 적(㎡)	해제기한	비 고
기정	마천시장정비사업구역	송파구 마천동 140-3번지 일대	9,757.0	2020. 3. 2.	근거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6항 및 부칙 제5조 제3항
변경	마천시장정비사업구역	송파구 마천동 140-3번지 일대	9,757.0	2022. 3. 2.	

4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연장

5. 관련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(☎02-2133-4644) 및 송파구 지역경제과(☎02-2147-2518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공 고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-1310호

혼잡통행료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(공고)

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남산 1.3호 터널 혼잡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하여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이사, 수취인 미거주, 수취인 부재, 주소불명 등의 사유에 의한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0년 5월 7일
서울특별시장

1. 건 명 : 혼잡통행료 과태료 사전통지서 송달불능분에 대한 공시송달
2. 근 거 :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제11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,
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
3. 공시송달 대상 : <불임>
4. 의견제출 안내
 - 가. 당사자는 본 통지를 받은 날(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)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.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.
 - 나. 3인 탑승차량, 장애인 차량, 공무(보도용)차량, 저공해/요일제 전자태그 부착 차량 등은 의견제출 기한 내에 혼잡통행료징수조례 제6조에 따른 혼잡통행료 면제 혹은 감면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 - 다. 의견 제출 방법
 - 인터넷 : www.sisul.or.kr 접속 후 교통사업 → 기타교통업무 → 혼잡통행료 징수 → 혼잡통행료 의견제출 클릭 · 작성
 - 팩스 : 02-756-1398 ※ 성명, 차량번호, 일자, 사유, 탑승자 연락처 등 필요
 - 문의 전화 : 02-2290-6438~9, 6179, 6467 (서울시설공단)
5. 인터넷 납부 : <https://etax.seoul.go.kr> ※ 공인인증서 필요, 신용카드 납부 가능

불임 :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.